

	Chap6.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54-1.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제목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판시사항	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원심: 특허법원 2026. 2. 12. 선고 2023나11436 판결
- 결과: 상고 모두 기각
- 주요 쟁점
 -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구비에 관한 재판상 자백
 -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및 사후적 판단의 금지
 - 침해제품의 폐기 범위
 -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1)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

1. 특허침해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

-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 사실에 해당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의 법리를 재확인함.

2. 진보성 판단기준 및 사후적 판단 금지

-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함.
- 그 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이때 **대상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및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의 법리를 재확인함.

3. 기타 판단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의 **침해제품 폐기 범위에 관한 판단 및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2) 사안개요

1. 당사자

- 원고: '이차 전지용 극판 스테킹 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 피고: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2. 청구 내용

- 원고는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 **침해금지**
 - **침해제품의 폐기**
 - **손해배상**을 청구함.

3. 분쟁의 경위

-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
- 위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및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가 문제됨.
-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사이의 차이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가 문제됨.
- 이와 함께
 - 특허권 침해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할 수 있는지
 -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문제됨.

(3) 법리

쟁점 1.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구비에 관한 진술과 재판상 자백

㉠ 문제점

-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한 경우 그 진술이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됨.

㉡ 판단기준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답안 활용 구조

-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
→ **재판상 자백의 대상**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을 구속**
→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음**

㉔ 적용상 주의

- 본 판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특허권 침해**라는 법률적 판단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 제품이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임.

쟁점 2.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㉑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㉒ 사후적 판단의 금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㉓ 판단순서

- 가)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 나) 대상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 다)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 라)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마)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 바)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 금지

쟁점 3. 침해제품의 폐기 범위

㉑ 문제점

-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다른 장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원고가 **침해부분을 포함하는 장비 전체의 폐기**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㉒ 이 사건의 판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위 판단에 **침해제품의 폐기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㉓ 정리

- 본 판결은 폐기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새롭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
-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폐기범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임.

쟁점 4.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①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함.

②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등이 없다고 판단함.

③ 정리

- 본 판결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별도로 실시한 판결은 아님.
- 이 사건에서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고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임.

(4) 대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특허법원(원심법원)의 판단

1. 피고 실시제품의 권리범위 속부

-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제1심법원에서의 진술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

2. 진보성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를 비교하면 원심 판시 차이점들이 존재함.
-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점들을 선행발명 4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더하거나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첨부된 대법원 판결문에는 위 '차이점들'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보충하지 않음.

3. 침해제품 폐기

- 원고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을 뿐,
- 그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4. 손해액

-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함.
- 이에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함.

(5) 대법원 판단

1. 재판상 자백

법리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제1심법원에서의 진술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 원심 판단에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2. 진보성

법리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함.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존재함.
-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점들을 선행발명 4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더하거나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음.
- 원심 판단에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3. 침해제품 폐기

- 원심은 원고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침해제품의 폐기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4. 손해액 산정

- 원심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함.
-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6) 결론

-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구비에 관한 피고의 제1심 진술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을 구속함.
- 따라서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
- 특허권 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는 인정되나 그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는 인정되지 않음.
- 손해액은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으로 정한 원심 판단이 유지됨.
-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7) 한줄 키워드 요약

[핵심 법리]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 제품이 어떠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진보성 법리]

진보성은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압축 키워드]

구성요소 구비 사실 → 주요사실 → 재판상 자백 → 적법한 취소 없으면 법원 구속 / 선행기술·차이점·통상의 기술자 → 출원 당시 기술수준 → 용이극복 여부 → 사후적 판단 금지

(8) 추가 정리 포인트

1. 재판상 자백의 대상을 정확히 특정할 것

- 판례가 재판상 자백의 대상으로 판시한 것은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사실임.
- 따라서 사례형 답안에서는 ‘특허침해 자체에 관한 자백’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구비 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으로 특정하는 것이 판례에 충실함.

2. 재판상 자백의 효과까지 연결할 것

- 답안에서는 단순히 자백 성립 여부만 언급하지 않고,

재판상 자백 성립 → 적법한 취소 여부 → 법원의 구속 →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의 증거인정 불가의 순서로 논증하는 것이 적절함.

3. 진보성 판단에서는 판단시점을 명시할 것

- 기준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임.
- 출원 후 또는 대상 발명의 내용을 알고 난 이후의 관점이 아님.

4. 진보성에서 사후적 판단 금지는 독립적으로 적시할 것

- 다음 표현은 사례형 답안에서 그대로 활용할 가치가 높음.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범위 판단은 본 판결의 사실관계 범위에서 정리할 것

- 본 판결에서는 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는 가능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는 인정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함.

-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폐기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별도로 상세하게 실시한 것은 아님.
- 따라서 본 판결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폐기범위 판단기준을 확대하여 서술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6. 손해액 부분도 판결문 실시 범위를 넘지 않을 것

- 본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곤란
 - →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 산정
 - → 이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음
까지임.
- 제7항에 따른 구체적인 상당한 손해액 산정기준은 이 대법원 판결문에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임의로 보충하지 않음.

7. 권리남용 관련 정리

- 이 사건의 요약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 다만 대법원 판결문 본문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별도의 법리나 판단기준이 독립적으로 실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과 진보성을 중심 법리로 정리하고, 권리남용은 별도의 핵심 법리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최종 암기 포인트

- ① 상대방 제품의 구성요소 구비 사실 =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 = 재판상 자백의 대상
- ② 재판상 자백 =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 구속 =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의 증거인정 불가
- ③ 진보성 =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 대상 발명과의 차이 +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 ④ 판단시점 =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 ⑤ 판단방법 =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를 극복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 ⑥ 금지되는 판단 =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사후적 판단
- ⑦ 폐기범위 = 이 사건에서는 침해부분의 완제품·반제품 폐기 인정 / 노칭장비 전체 폐기 불인정
- ⑧ 손해액 =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제4항 산정 곤란 → 제7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